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3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이해민·조인철·이학영

김재원 · 김우영 · 신장식

정춘생 · 김선민 · 이정헌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동 원해 침탈했으며,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 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아세웠고, 국회 구성원들은 계업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국회는 비상계업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업군의 철수를 이루어냈음.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주시민의 날: 12월 3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민주시민의 날: 12월 3일</u>	